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홍성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3. .

발 의 자 : 홍성욱, 김병철 의원

(찬성의원 : 6 인)

## 1. 제안이유

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○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(안 별표 1)

- 배기량 2,000cc이상 다목적형 :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→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매 입 대 상	매 입 기 준	비 고
<p>1. 자동차 신규등록</p> <p>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</p> <p>① 1,500cc이상</p> <p>② 2,000cc이상</p> <p>③ 단, 승용자동차 중에서 7~10인승 이하</p> <p>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</p> <p>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,000cc이상</p> <p>2. 자동차 이전등록 (사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</p> <p>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</p> <p>① 1,500cc이상</p> <p>② 2,000cc이상</p> <p>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,000cc이상</p> <p>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,000cc이상</p>	<p>취득세 과표의 4/100</p> <p>취득세 과표의 5/100 (단,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/100)</p> <p>대당 390,000원</p> <p>취득세과표의 1.5/100</p> <p>취득세과표의 1.5/100</p> <p>취득세과표의 3/100</p> <p>취득세과표의 5/100</p> <p>취득세과표의 1.5/100</p> <p>취득세과표의 1.5/100</p>	

매 입 대 상	매 입 기 준	비 고
<p>3. 각종 허가</p> <p>가. 도로하천(소하천포함)·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</p> <p>나.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(전·답) ② 산임야, 잡종지등 기타지목</p> <p>다. 골프장 등록</p> <p>4. 건설공사도급계약(「건설산업 기본법」), 용역계약,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 (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채결 포함)</p>	<p>점·사용료부과액의 5/100 (점·사용 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서는 최초 점·사용료 징수시에만 점·사용료 부과액의 5/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을 매입함)</p> <p>m<sup>2</sup>당 1,500원 m<sup>2</sup>당 3,000원 m<sup>2</sup>당 60원</p> <p>대금청구 금액의 2/100 (다만,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함)</p>	

※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,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,000원 단위로 계산한다.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제19조제3항(지방채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[지방공기업법]

**제19조(지방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경상적(經常的)인 운전자금(運轉資金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회전기금(回轉基金)의 재원(財源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**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**
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
### 제9조 (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)

- ①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, 각종허가, 건설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③ 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(이하 “도시철도채권”이라 한다)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별표 1 중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.

⇒ 채권매입요율 인하에 따른 신규 차량등록 대수 증가(28.4%)로 채권매입액 증가(4억여원) 및 연간 32억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됨

## 4. 작 성 자

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의원